

제천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94/8
------------------	------

제출년월일 : 2004. 11.
제출자 : 제천시장

1. 제안이유

-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개정(2004.8.10 대통령령제18514호)으로 개정된 규정 및 위임된 사항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고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의 원활한 지원을 도모하고자함.

2. 주요내용

-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비용의 납부등에 관한 내용신설(제3조)
- 주민지원사업계획의 협의 등에 관한 내용신설(제7조)
- 지역개발계획의 반영 내용신설(제9조)
- 주민편익시설 이용등에 관한 내용신설(제10조)
- 기금의 운영·관리 등에 관한 내용신설(제12조, 제13조, 제14조)
- 기금의 사용등에 관한 내용신설(제15조제1항, 제2항)
-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의 수당등에 관한 내용신설(제17조)
- 주민감시요원의 수당등에 관한 내용신설(제18조)
- 기금의 결산 등에 관한 내용신설(제19조)

3. 근거법령

-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법률 제7169호, 2004. 2. 9일부개정]
-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대통령령 제18514호, 2004. 8. 10일부개정]

4. 의안전문 : 복 임

5. 신구조문대비표 : 해당없음

- 첨부 : 1. 기타참고자료(법령등) 사본 1부
 2. 입법예고 사본 1부

제천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제천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폐기물처리시설"이라 함은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말한다.
2. "주변영향지역"이라 함은 법 제17조제1항 및 영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당해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으로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으로 결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제3조(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비용의 납부 등) ①영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금액은 당해 사업의 착공 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4회 이내로 분납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 납부금액의 징수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4조(폐기물처리수수료의 차등적용) ①시장은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천시 이외의 지역에서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는 선별적으로 반입을 허가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하여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는 제천시에서 산정한 폐기물 수수료의 100분의 10을 가산금으로 징수한다. 다만, 협약에 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5조(입지선정계획 결정대상 폐기물처리시설의 규모) 법 제9조제1항에서 "지방자치 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조성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폐기물매립시설과 1일 처리능력 50톤 이상인 폐기물소각시설을 말한다.

제6조(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운영) ① 영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 지원협의체는 15인 이내로 하되, 주민대표가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위원은 다음 각호에서 정한 자로 한다.

1. 당해 폐기물처리시설이 소재하는 지역 시의회의원
 2. 폐기물처리시설의 주변영향지역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으로서 시의회에서 선정한 주민대표
 3.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주민대표가 추천한 전문가 2인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선정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③ 위원장 선임, 운영방법 등은 주민지원협의체의 의결로서 정한다.

제7조(주민지원사업계획 협의) ① 주민지원협의체는 익년도 사업계획을 당해 연도 9월 말일 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주민지원사업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의 목적
2. 지원기간
3. 연차별 출연재원의 규모 및 조달계획
4. 지원사업의 내용 및 지원기간 중 연차별 투자계획
5. 지원사업이 지역발전에 미치는 효과

제8조(이주대책의 수립대상) 영 제22조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제5조에서 규정한 시설로서 당해 부지내의 집단주거지역주민등이 집단이주를 희망하는 경우와 환경상영향조사등으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마을 또는 가옥을 말한다.

제9조(지역개발계획에의 반영) ① 시장은 조성면적 30만 제곱미터 이상인 폐기물매립시설의 주변지역에 대해서는 영 제2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개발 촉진을 위한 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개발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업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주민소득향상을 위한 사업

2. 주민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3. 기타 지역개발을 위한 사업

제10조(주민편익시설의 이용 등) ①시장은 주민편익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이용료등을 징수할 수 있다. 단, 당해 시설을 위탁운영시에는 수탁자로 하여금 시장이 정한 이용료 등을 직접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②이용료등의 징수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주변영향지역안에 거주하는 주민에 대하여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편익시설의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11조(주민지원기금의 조성) ①시장은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 시설 주변 영향지역의 주민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제천시의 일반회계 출연금
 2.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수수료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3. 제천시외 지역에서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가산금
 4. 기금의 운용으로 인한 수익금
 5. 폐기물처리시설에 폐기물을 반입·처리하고자 하는 타시·군·구의 출연금
- ②시장은 주변영향지역에 대한 결정 후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제1항 제1호의 출연금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제12조(기금의운용·관리 등) ①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기금의 재원중 제11조제1항제1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의 경우에는 매년 3월 31일까지(최초의 출연금의 경우에는 시장이 수립한 주민지원 계획에 명시된 지원기간의 개시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까지), 제11조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와 가산금의 경우에는 해당 수수료 및 가산금을 징수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계좌에 예입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시금고에 주민지원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계좌를 설정하고 이자율이 높은 상품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④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제13조(기금관리 공무원) ①시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금관리 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관광건설국장
2. 기금출납원 : 청소시설담당, 자원관리담당

②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중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4조(기금의 운용계획) ①시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 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제천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5조(기금의 사용 등) ①영 제27조제1항 별표3의 규정에 의한 기타사업은 다음과 같다.

1. 마을발전기금
2. 주민건강 진단비
3. 구충 및 방역약품 공급
4. 기타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요구한 사업 중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영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구별 지원사업은 다음과 같다.

1. 지역난방시설 및 난방비 지원(소각장 시설에 한한다)
 2. 주택개량 등의 주거환경개선(냉·난방시설의 설치사업 포함)
 3. 기타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요구한 사업 중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③영 제27조제1항 별표3 및 제1항, 제2항에서 정하는 사업 및 활용 목적 외에 기금총액의 100분의 5의 범위 안에서 홍보활동, 주민의견 수렴 및 주민 지원협의체의 운영 등에 필요한 운영경비에 이를 충당할 수 있다.

제16조(주변영향지역지원 등) 영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간접영향권안의 주민은 공동사업 형태로 지원함을 원칙으로 하되, 제15조제2항의 사업에 대하여는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위원의 수당 등) 주민지원협의체의 위원에게는 제천시위원회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주민감시요원의 수당 등) ①법 제25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감시요원의 수당은 근속연수 1년 미만의 환경정리원의 월 지급액 수준으로 한다. 단, 학자금과 명절휴가비는 제외한다.

②주민감시요원의 촌속기간은 폐기물 반입기간으로 한다.

제19조(기금의 결산 및 보고) ①시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기금 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 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 말일까지 제천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20조(관계규정의 준용) ①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제천시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 발췌

지방자치법

[일부개정 2004.1.29 법률 제07128호]

제15조 (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 2004.2.9 법률 제07169호]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이라 함은 폐기물관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을 말한다.

제6조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동)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를 개발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로부터 발생되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지방자치단체인 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8조 (폐기물수수료의 차등 적용) 폐기물처리시설을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1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을 포함하며 제9조제4항 및 제19조제1항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장은 당해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폐기물에 대한 수수료를 징수함에 있어 당해 폐기물처리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시군구(지방자치단체인 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외의 지역에서 반입하는 폐기물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지방자치법 제1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의 경우에는 조합규약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따로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개정 1997.8.28>

제9조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선정) ① 매립량이 1일 300톤 이상으로서 조성면적 15만제곱미터 이상인 폐기물매립시설, 1일 처리능력 50톤 이상인 폐기물소각시설 및 그 밖의 폐기물처리시설로서 주변지역에 대한 환경상 영향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환경부장관이 설치하는 시설에 한한다)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시설에 한한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관"이라 한다)은 입지선정계획을 결정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9.2.8, 2004.2.9>

1.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2.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당해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외의 지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반입하여 처리하고자 하는 양이 당해 폐기물처리시설 처리능력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17조 (주변영향지역의 결정고시) ①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관은 제11조의 3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설치계획이 공고된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당해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으로 인하여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이하 "주변영향지역"이라 한다)을 결정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9.2.8>

②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변영향지역을 결정고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7조의2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주민지원협의체(이하 "지원협의체"라 한다)가 선정한 전문연구기관으로 하여금 환경상 영향을 조사하게 하고, 그 결과를 수렴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협의체가 주변지역의 환경상 영향조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하거나 관계전문가의 검토의견서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1997.8.28, 2004.2.9>

③ 주변영향지역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개정 1999.2.8>

1. 직접영향권 :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상 영향을 조사한 결과 인체동물의 활동, 농축산물, 임산물 또는 수산물에 직접적으로 환경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어 지역주민을 이주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
2. 간접영향권 :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의 지역으로서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상 영향을 조사한 결과 환경상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직접영향권외의 지역. 다만,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밖의 지역도 포함시킬 수 있다.

제18조 (이주대책) ①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당해 시설의 부지 및 그 직접영향권안의 주민에 대하여 이주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21조 (주민지원기금의 조성) ①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관은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주민지원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1997.8.28, 1999.2.8>

1.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관의 출연금
2. 당해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수수료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
3.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
4. 기금의 운용으로 인한 수익금
5. 당해 폐기물처리시설에 폐기물을 반입처리하고자 하는 다른 지방자치 단체의 출손금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한 주민지원기금의 운영관리에 관한 업무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1997.8.28>

④ 주민지원기금의 운용관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 (지역주민의 감시)

②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감시요원의 활동을 감독하고 이들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1999.2.8>

1.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관이 환경부장관인 경우 :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2.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관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 : 당해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기준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 2004.8.10 대통령령 제18514호]

제4조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⑤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납부금액을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납부계획서를 그 개발사업의 착공전에 그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제출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의 적정여부를 확인한 후 납부금액 및 납부기한을 납부계획서의 제출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시·군 또는 구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부금액을 분납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 (주변영향지역의 결정·고시) ①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관은 법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으로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이하 "주변영향지역"이라 한다)을 폐기물처리시설설치계획이 공고된 날부터 2년 이내에 결정·고시하여야 한다. 결정·고시가 있은 후 환경상 영향의 변동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변영향지역을 조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개정 1999.6.30>

제18조 (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운영 등) ①법 제17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지원협의체(이하 "지원협의체"라 한다)의 구성방법은 별표2와 같다.
<개정 2004.8.10>

제22조 (이주대책의 수립대상) 법 제1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폐기물처리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조성면적 30만제곱미터이상인 폐기물매립시설로서 그 사용기간이 10년 이상인 시설
2. 제1호의 규모미만인 폐기물매립시설중 이주대책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환경부장관의 고시로 정하는 시설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제23조 (지역개발계획에의 반영대상) 법 제1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폐기물처리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조성면적 100만제곱미터이상인 폐기물매립시설로서 그 사용기간이 10년 이상인 시설
2. 제1호의 규모미만인 폐기물매립시설중 당해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관인 지방자치단체가 지역개발계획에의 반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조례로 정하는 시설

제27조 (주변영향지역지원 등) ①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관은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그 지역의 여건과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지원기금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가구별로 지원하거나 별표 3의 지원사업을 실시하되, 가구별 지원규모, 지원사업의 종류 및 규모를 지원업체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1999.6.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의 방식은 직접영향권안의 주민에 대하여는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으며, 간접영향권안의 주민에 대하여는 공동사업의 형태로 지원함을 원칙으로 하되,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관이 가구별 지원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고시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다.

[별표 2] <개정 1999.6.30, 2004.8.10>

자원협의체의 구성방법(제18조제1항관련)

1. 자원협의체의 정원

폐기물매립시설		폐기물소각시설	
조성면적	정 원	처리규모	정 원
100만제곱미터 이상	21인 이내	1일처리능력 300톤 이상	15인 이내
100만제곱미터 미만	15인 이내	1일처리능력 300톤 미만	11인 이내

2. 자원협의체의 위원

자원협의체는 폐기물처리시설로부터의 거리, 환경상 영향의 정도, 주민의 수 등을 고려하여 제1호의 정원의 범위안에서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관이 관할 시장 군수구청장 및 시군구의회와 협의하여 다음 각호의 자로 구성한다. 다만, 정원중 주민대표가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가. 당해 폐기물처리시설이 소재하는 시군구의회 의원

나. 주변영향지역(주변영향지역이 결정고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폐기물매립시설의 경우 부지경계선으로부터 2킬로미터 이내, 폐기물 소각시설의 경우 부지경계선으로부터 300미터 이내)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으로서 해당 시군구의회에서 선정한 읍면동별 주민대표

다. 나목의 주민대표가 추천한 전문가 2인

비고 : 1.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자원협의체의 의결로써 선임한다.

2. 주변영향지역(주변영향지역이 결정고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폐기물 매립시설의 경우 부지경계선으로부터 2킬로미터 이내, 폐기물소각시설의 경우 부지경계선으로부터 300미터 이내)에 주민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민대표를 위촉하지 아니하고, 주민대표 대신에 해당 시군구의회 의원 각 4인과 시군구의회에서 추천한 전문가 2인으로 자원협의체를 구성한다.

3. 전문가는 전문대학 이상의 환경관련학과의 조교수 이상, 국공립연구기관의 선임연구원 이상 또는 환경관련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관련분야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자로 한다.

[별표 3]<개정 1999.6.30>
주변영향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의 종류(제27조제1항관련)

사업구분	사업내용	지원사업 세부 내용
1. 소득증대 사업	농림수산업 시설	공동영농·영어시설(공동영농기계·공동 축산·공동어선을 포함한다), 농기구수리시설, 공동양식·양어장, 생산품 공동저장소, 공동가공공장, 농업용처수지·농로·임도·농업용수로·농업용양수장·농작물 및 임산물재배시설 등
	상공업 시설	공업용수도·직업훈련소·시장·공용창고·구판장·소규모공단 등
	관광산업 시설	휴게소·휴양소·토산품판매장 등
2. 복리증진 사업	의료시설	보건진료소 등
	사회복지 시설	노인회관·마을회관·공중목욕탕·가로등·어린이놀이터·버스승차대기장 등
	도로시설	소규모도로 등
	항만시설	소형선박용항만시설·소규모여항·호안용벽·방파제 등
	상하수도 시설	상수도시설·하수도시설 등
	교육·문화 시설	도서관·유치원·통학차·문화시설·향토박물관·사적시설·사회교육시설 등
	환경·위생 시설	쓰레기처리시설·배수구시설·청소차·공중위생시설·환경감시시설 등
	운동·오락 시설	운동장·야영장·운동기구 등
	전기·통신 시설	공용전기시설 및 전화시설·텔레비전 방송공동수신시설 등
3. 육 영 사업	기 타	지역난방시설 및 난방비지원(소각시설에 한한다), 주택개량 등의 주거환경개선(냉·난방시설의 설치사업을 포함한다) 등
	컴퓨터·피아노 등 교육기자재·학자금 및 장학금지급·장학기금적립·학교급식지원 등	
4. 기 타 사업	기타 소득증대·복리증진·육영사업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환경부장관의 고시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	

비고 : 지원사업의 내용에는 소득향상, 복리증진 및 육영사업 등과 관련된 계획·조사 및 연구사업과 시설의 유지·보수 및 운영업무가 포함된다.

제천시공고 제2004-473호

제천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 9월 23일

제 천 시 장

제천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입법예고

1. 조례명: 제천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2004.8.10 대통령령 제18514호)으로 개정된 규정 및 위임된 사항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고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의 원활한 지원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비용의 납부등에 관한 내용신설(제3조)
- 주민지원사업계획의 협의 등에 관한 내용신설(제7조)
- 지역개발계획의 반영 내용신설(제9조)
- 주민편익시설 이용등에 관한 내용신설(제10조)
- 기금의 운영·관리 등에 관한 내용신설(제12조, 제13조, 제14조)
- 기금의 사용등에 관한 내용신설(제15조제1항, 제2항)
-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의 수당등에 관한 내용신설(제17조)
- 주민감시요원의 수당등에 관한 내용신설(제18조)
- 기금의 결산 등에 관한 내용신설(제19조)

4. 의견서 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4년 10월 12일까지 제천시장(참조 자연환경과)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 640-5468 FAX 640-5459. E-mail :sim@okjc.net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 주민감시요원 예상 수당액 : 1,252,000원(30일기준)

1. 환경정리원 봉급지급 기준표(2004년)

과 목	구 분	금액(단위:원)
1. 기본급	일	22,400
2. 정액수당		
- 가족수당	월	배우자30,000 자녀1인20,000
- 특수업무수당	월	90,000
- 작업장려수당	월	70,000
3. 복리후생비		
- 정액급식비	월	80,000
- 가계보조비	월	80,000
- 교통보조비	월	120,000
- 급량비(조식대)	월	70,000
- 목욕비	월	20,000

2. 주민감시요원 월 예상 수당액 : 1,252,000원

$$1) \text{기본급} : 22,400\text{원} \times 30\text{일} = 672,000\text{원}$$

$$2) \text{각종수당} : \text{정액수당} + \text{복리후생비} = 580,000\text{원}$$